

관광버스 내 난동 행위 방지 및 승객 안전의무 강화를
위한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

검 토 보 고

1. 제안경위

가. 제 출 자 : 김동욱 의원 외 20명

나. 의안번호 : 제2496호

다. 제출일자 : 2025. 3. 27.

라. 회부일자 : 2025. 4. 2.

2. 주 문

- 「경범죄 처벌법」을 개정하여 관광버스 및 대중교통 내 음주 후 난동 행위와 운전 방해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벌금 기준을 현행 10만 원 이하에서 대폭 상향 조정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제재를 가능하게 함
- 「도로교통법」을 개정하여 운전자가 승객의 난동 행위로 인해 안전 운행이 어려운 경우 경찰 신고 후 강제 하차 조치를 요청할 수 있

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승객이 운전자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 추가적인 제재를 가능하도록 함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개정하여 운전자가 승객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권한을 명확히 하고, 승객의 난동 행위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함

3. 제안이유

- 최근 관광버스 내에서 승객이 음주 후 난동을 부리거나 운전자의 제지를 무시하고 차량 내부를 돌아다니는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이러한 행위는 운전자의 집중력을 저하시켜 대형 사고를 유발할 위험이 크며, 다른 승객의 안전에도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음
- 현행 「도로교통법」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운전자가 승객의 안전을 유지할 책임을 강조하고 있으나, 승객의 난동 행위에 대한 처벌 조항이 미비하여 법적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음
- 「경범죄 처벌법」에 따른 대중교통 내 소란 행위 처벌은 벌금 10만원 이하 수준에 그치고 있어 관광버스와 같은 장거리 이동 차량에서 발생하는 음주 난동 행위에 대한 억제 효과가 미흡함

- 운전자가 난동을 부리는 승객을 퇴거 조치할 법적 근거가 없어 실질적인 대응이 어려우며, 승객의 난동 행위가 지속될 경우 운전자가 이를 제지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도 존재하여 과도한 책임이 부과되는 구조적 문제도 해결이 필요함
- 「경범죄 처벌법」의 벌금 기준을 대폭 상향하고, 「도로교통법」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을 통해 운전자의 법적 권한을 명확히 하여 난동 승객에 대한 실효적인 제재가 가능하도록 해야 함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경범죄 처벌법」, 「도로교통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나. 기타사항: 없음

다. 관련부서 의견조회 결과¹⁾

○ 서울시장 (교통실 버스정책과) : 원안가결

- 관광버스 등 대중교통 운행시 승객의 음주 난동 등 운전방해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및 조치 권한 신설에 대한 필요성과 취지에 대해 원칙적으로 공감하나
- 「경범죄 처벌법」, 「도로교통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1) 제330회 임시회 의원발의 건의안에 대한 의견제출(市 버스정책과-14951호, 2025.4.18.)

법령상 구체적인 처벌 강화의 정도,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의 요건과 내용 등에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짐

5. 이 송 처

가. 대한민국 국회,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5. 검토의견(수석전문위원 장훈)

가. 개 요

- 동 건의안은 관광버스 내에서 일부 승객들의 난동이나 소란 행위 등으로 인한 대형사고 유발 등의 사회적 문제가 발생되고 있어 운전자와 승객의 안전을 보장하고 질서를 지킬 수 있도록 난동 승객에 대한 처벌 규정 강화 촉구를 위한 관련법령 개정 촉구를 건의하는 것임

나. 검토의견

■ 관광버스 내 음주 후 난동, 소란 행위에 대한 법률

- 「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1항제20호²⁾에서는 ‘여러 사람이 타는 기차·자동차·배 등에서 주위를 시끄럽게 하거나 술에 취해 다른 사람에게 주정한 사람’에 대해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도로교통법」 제4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제1항³⁾에

2) 「경범죄 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1~19호 생략)

20. (음주소란 등) 공회당·극장·음식점 등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 또는 여러 사람이 타는 기차·자동차·배 등에서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거나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한 사람

3) 「도로교통법」 제4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다음

서는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승객이 차안에서 안전운전에 현저히 방해가 될 정도로 춤을 추는 등 소란행위를 방치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행위를 방조한 운전자는 같은 법 제156조(벌칙)4)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음

- 한편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제13항⁵⁾ 및 제26조(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제1항제9호⁶⁾ 등에 따라 승객이 전세버스 내에서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고 좌석을 이탈할 경우 이를 제지하고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여야 하며, 어길 시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⁷⁾ 또는 영업정지 처분 등이 부과될 수 있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8호 생략)

9. 운전자는 승객이 차 안에서 안전운전에 현저히 장애가 될 정도로 춤을 추는 등 소란행위를 하도록 내버려두고 차를 운행하지 아니할 것

- 4) 「도로교통법」 제1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1. (일부 생략) 제49조(같은 조 제1항제1호·제3호를 위반하여 차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과 같은 항 제4호의 위반행위 중 교통단속용 장비의 기능을 방해하는 장치를 한 차를 운전한 사람은 제외한다), (이하 생략)

- 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운수종사자의 준수 사항) ⑬ 제1항부터 제12항까지 외에 안전운행과 여객의 편의 또는 서비스 개선 등을 위한 지도·확인에 대하여 운송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운수종사자의 준수 사항) ① 운수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8호 생략)

9. 그 밖에 안전운행과 여객의 편의를 위하여 운수종사자가 지키도록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 7)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4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4. 제26조제1항(같은 항 제7호의4는 제외한다)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관련 법령에서는 전세버스에서 승객이 난동을 부리는 행위는 다른 승객의 안전을 위협함과 동시에 운전자의 운행을 방해할 수 있어 금지하고 있으며 운전자 등 에 대해서는 이를 방조할 경우 벌금과 벌점 등을 부과하고 있지만 난동을 부리는 승객에 대한 처벌은 오히려 벌금 10만원 이하의 경미한 수준으로 이로 인한 법적 불균형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임

※ 관광버스 내 음주 가무 행위 등에 따른 처벌 사항

관련법	준수사항	대 상	벌금, 과태료 등
「경범죄 처벌법」	주위를 시끄럽게 하거나 술에 취해 주정한 사람	승객	10만원 이하의 벌금
「도로교통법」	음주가무 행위 소란행위 방조	운수종사자 (운전자)	범칙금 20만원, 벌점 40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승객 좌석이탈, 가요반주기·스피커 등 이용한 소란행위 제지사항 방조	운수종사자 (운전자)	50만원 이하 과태료 등

■ 관광버스 내 음주 후 난동, 운전방해 행위 등에 대한 법령 개정 관련

- 도로교통공단 보도자료⁸⁾에 따르면 전세버스 교통사고는 코로나 19 확산 시기('20~'21년)를 제외하면 연간 1천여건 넘게

8) 전세버스 교통사고, 코로나19 확산 이전 수준 복귀 (도로교통공단 보도자료, 2023.8.18.)

□ 전세버스 교통사고 건수(최근 5년간(2018년~2022년) 월별)

구 분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18년	1,151	88	78	95	106	103	89	94	92	81	118	118	89
2019년	1,272	74	62	103	117	134	107	75	105	103	143	138	111
2020년	661	81	52	40	45	45	57	61	47	51	58	76	48
2021년	767	55	46	64	63	69	63	64	55	58	60	90	80
2022년	1,042	61	52	47	67	83	72	87	82	95	150	134	112

발생되었고 '18년 10월 1일~17일간 전국 고속도로에서 적발된 관광버스 내 음주가무 행위는 하루 1건 수준인 17건⁹⁾으로 파악된 바 있음

경찰은 매년 행락철 대형버스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단속을 강화¹⁰⁾하고 있으나 실제 단속은 쉽지 않은 실정임

- 동 건의안은 관광버스 내 음주 난동, 운전자 운전방해 행위 등을 근절하기 위해 현행 「도로교통법」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운전자가 승객의 안전을 보장하고 난동 승객에 대한 강제하차 등 조치를 취할 권한을 더욱 강력하게 명시하고 「경범죄 처벌법」에 따른 난동 시 벌금 기준을 대폭 상향하도록 법령 개정을 정부에 촉구하는 것임

- 현행 「도로교통법」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전세버스에서 운전자의 안전 의무 책임들을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승객의 난동 행위가 지속되더라도 운전자가 이를 제지하지 못

9) 관광버스에서 여전히 '죽음의 춤판'? (서울신문, 2018.10.18.)

- '18.10.1.~10.17. 전국 고속도로에서 적발된 관광버스 내 음주가무 행위: 17건 단속 (1일 1건)
- 단속지점: 경북 지역(중앙·중부내륙고속도로 등): 11건(64.7%) / 강원 지역(서울~양양고속도로 등) 5건 / 서해안고속도로: 1건 적발
- 단속 후 조치사항: 도로교통법에 따라 차량 내 음주가무 행위를 하다 적발시 운전기사는 벌금 10만원에 면허정지 처분에 해당되는 벌점 40점을 부과받음

10) 행락철 '꼴불견' 관광버스 '춤판' 여전...예방도 단속도 난감 (2024.11.5.,KBS NEWS)

- 음주가무 관광버스가 경찰 사이렌 울리면 버스안은 조용해져서 단속 어려움 발생
- 단속 적발시 운전기사 범칙금 10만원, 면허정지 40일, 버스업체는 과징금 180만원에 영업정지 30일 처분 가능하나 승객들은 처벌조항 없음

할 시 난동을 부리는 승객을 퇴거 조치할 수 있는 실질적 대응
규정이 없다는 점에서 대형버스 이용 승객들의 안전보호 측면
에서 동 건의안은 타당하다 보여짐

- 관광버스와 같은 전세버스는 다수의 인원이 함께 탑승하고 있
으므로 단 한번의 사고 발생은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더욱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바,

동 건의안을 통해 승객들의 안전에 대한 인식개선 뿐만 아니라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차량 내 음주가무 행위 및
난동 승객에 대한 실효적인 제재를 가능토록 개별 법률의 조
속한 정비 및 법적 처벌이 강화된다면 올바른 교통문화 정착
에 더욱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짐